

‘주거약자와의 동행’ 등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

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(안)

2022. 12.

 서울주택도시공사

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(안)

I 개정의 필요성

- ◆ “주거약자와의 동행” 을 위한 촘촘한 주거안전망 실행체계 구축
- ◆ 민선 8기 주택정책 및 공사 핵심사업을 선택과 집중하여 사업의 신속성 확보
- ◆ 미래성장기반 확보를 위한 조직체계 구성
- ◆ 경영환경변화에 따른 핵심기능 강화 및 유사기능 통폐합

- “주거약자와의 동행” 을 위한 촘촘한 주거안전망 실행체계 구축**
 - 반지하, 고시원, 옥탑방 등 물리적·환경적·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주거안전 취약거처에 약 40만 가구 거주
 - 침수·화재·위생 등에 취약한 주거취약계층의 생명·건강·생존을 보호하기 위한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필요
- 민선 8기 주택정책 및 공사 핵심사업을 선택과 집중**하여 사업의 신속성 확보
 -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노후 임대주택단지 재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 하면서 ‘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’ 공급 확대 추진
 - 공사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 중요한 용산역세권 도시개발사업, 창동·상계 거점개발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
 - 상생주택·모아주택·청년주택 등 민선8기 주택 전략사업 통합 추진하기 위한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신설에 유기적 대응 필요
- 미래성장기반 확보**를 위한 조직체계 구성
 - 택지개발 감소에 따른 새로운 수입원 확보를 위해 수익형 부동산 운영 수요 증가
 - 차량기지·차고지 등 공공시설의 입체적·복합적 개발을 통한 개발가용지 부족 극복
- 경영환경변화에 따른 핵심기능 강화 및 유사·중복기능 통·폐합**
 - 정부 및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경영효율화 기조에 따른 유사중복 기능 통·폐합
 - 업무연계성 등에 따른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능 조정

II 주요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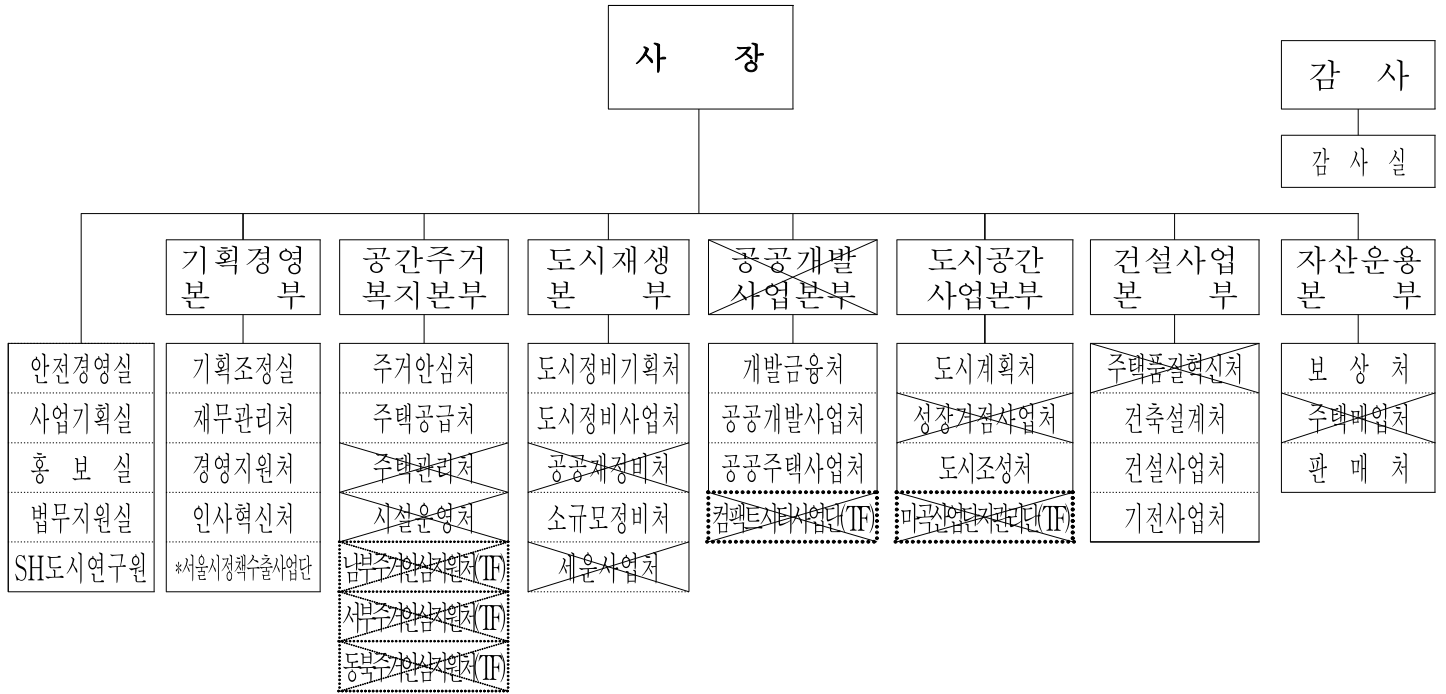
□ 직제개편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

분야	목표	주요내용
<p>촉촉한 주거안전망 실행체계 구축</p>	<p>① 반지하·고시원 등 주거취약계층 종합대책 차질없는 수행</p> <p>② 주거취약계층 노후임대주택 정비 (철거 후 신축 및 리모델링)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</p> <p>③ 1자치구 1주거안심종합센터 확대에 따른 주거복지기능 강화</p>	<p>☞ “동행안심처” 신설</p> <p>☞ “주거환경개선처” 신설</p> <p>☞ “센터운영처” 신설</p>
<p>핵심사업 선택과 집중</p>	<p>④ 역세권 및 위탁개발사업 등 공사 핵심사업 실행력 확보</p> <p>⑤ 노후 임대단지 재정비 본격 추진</p> <p>⑥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</p>	<p>☞ “전략사업본부” 신설</p> <p>☞ “공공주택정비처” 신설</p> <p>☞ “용산사업부” 및 “창동사업부” 신설</p>
<p>미래성장 기반확보</p>	<p>⑦ 수익형 부동산 운영을 통한 공사 재무구조 개선</p> <p>⑧ 차량기지, 차고지 등 입체적·복합적 개발 추진</p> <p>⑨ 디지털 혁신 및 정보보안 역량강화</p>	<p>☞ “자산관리처” 신설</p> <p>☞ “입체도시사업처” 정규직제화</p> <p>☞ “디지털정보부” 정규직제화</p>
<p>효율적 조직관리</p>	<p>⑩ 핵심기능 중심으로 유사기능 통합</p>	<p>· 유사중복기능 통폐합</p> <p>· 하자처리 기능 일원화 등 기능조정</p>

□ 신·구 기구대비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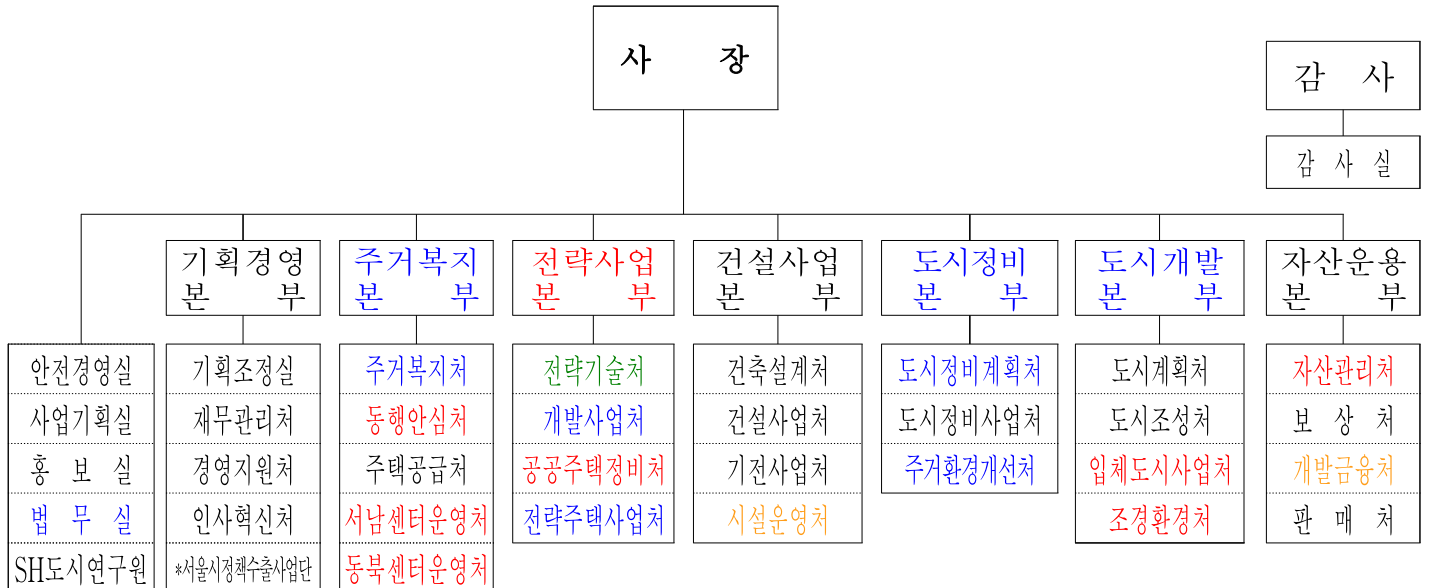
[현 행]

사장, 감사, 7본부, 6실 1원 28처 3단



[개 편(안)]

사장, 감사, 7본부, 6실 1원 27처 1단



■ 신설 ■ 부서명 변경 ■ 소속변경 ■ 소속 + 부서명 변경

□ 기구 변동사항: 처 단위 감 3, 부 단위 감 2

구분	현행	개정	비고
총계	사장 감사 7본부 6실 1원 28처 3단 107부 26센터	사장 감사 7본부 6실 1원 27처 1단 105부 26센터	처 단위 감 3 부 단위 감 2
정규조직	사장 감사 7본부 6실 1원 25처 95부 26센터	사장 감사 7본부 6실 1원 27처 101부 26센터	처 단위 증 2 부 단위 증 6
임시조직	3처 2단 12부	4부	처 단위 감 5 부 단위 감 8
한시조직	1단	1단	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

□ 정원 조정

구분	총정원	임원	직원						
			계	사무직·기술직				주거복지직	전문직
				소계	1급	2급	3급이하		
기존	1,386	5	1,375	902	20	69	813	406	73
개편(안)	1,386	5	1,375	902	20	69	813	421	58
증감	-	-	-	-	-	-	-	15	△15

- 도시재생·택지개발 등 수요감소 분야 전문직 정원을 조정(15명)하고, 주거복지 기능 강화에 따른 주거복지직(15명) 증원하여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에 대응: 시장님 한국노총 간담회('22.5.2) 등 반영

III

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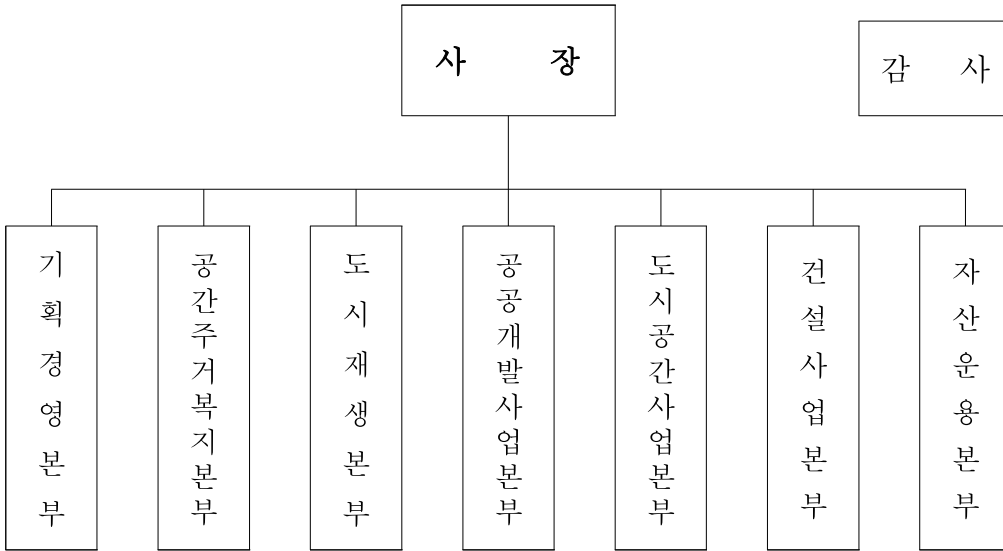
현 행	개 정(안)
<p>제22조 (조직 및 정원) ① 공사에 사장, 감사, 7본부를 두며, 기구표는 <u>별표1</u>과 같다.</p> <p>②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의 정원은 <u>별표2</u>와 같다. 단, 일시적 사업 확대 또는 공사의 관리·운영 지원 등에 소요되는 인력에 대하여 별표2의 정원과 별도로 정수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.</p> <p>③ 생략</p> <p>④ 생략</p>	<p>제22조 (조직 및 정원) ① 공사에 사장, 감사, 7본부를 두며, 기구표는 <u>별표1</u>과 같다.</p> <p>※ <u>별표1</u> 개정 ⇒ <u>별첨</u></p> <p>②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의 정원은 <u>별표2</u>와 같다. 단, 일시적 사업 확대 또는 공사의 관리·운영 지원 등에 소요되는 인력에 대하여 별표2의 정원과 별도로 정수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.</p> <p>※ <u>별표2</u> 개정 ⇒ <u>별첨</u></p> <p>③ 현행과 같음</p> <p>④ 현행과 같음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(2022.00.)</p> <p>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

【별표1 (제22조제1항 관련)】

기 구 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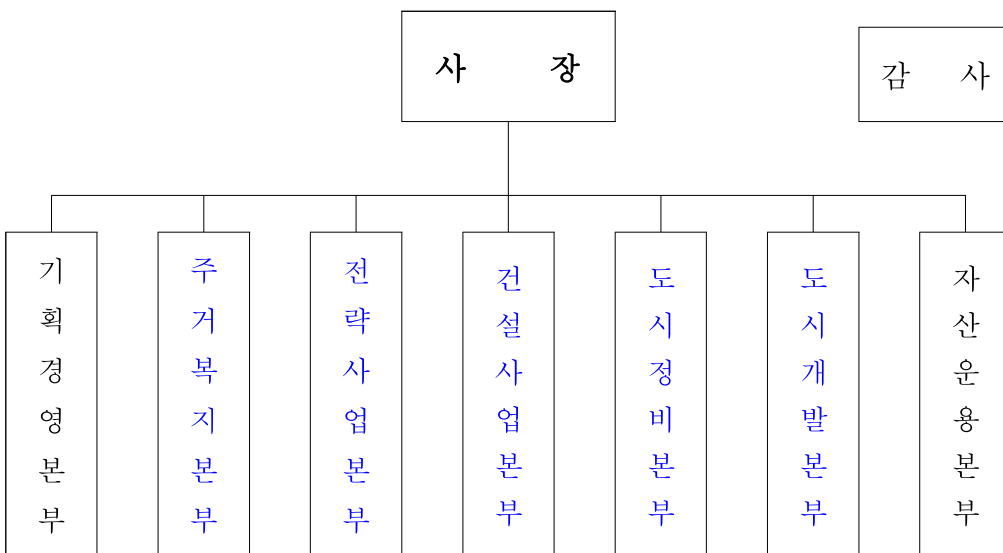
(현 행)

(사장, 감사, 7본부)



(개정(안))

(사장, 감사, 7본부)



【별표2 (제22조제2항 관련)】

정 원 표

(현 행)

총정원	임 원	직 원						
		계	사무직·기술직				주 거 복지직	전문직
			소계	1급	2급	3급 이하		
1,386	5	1,381	902	20	69	813	406	7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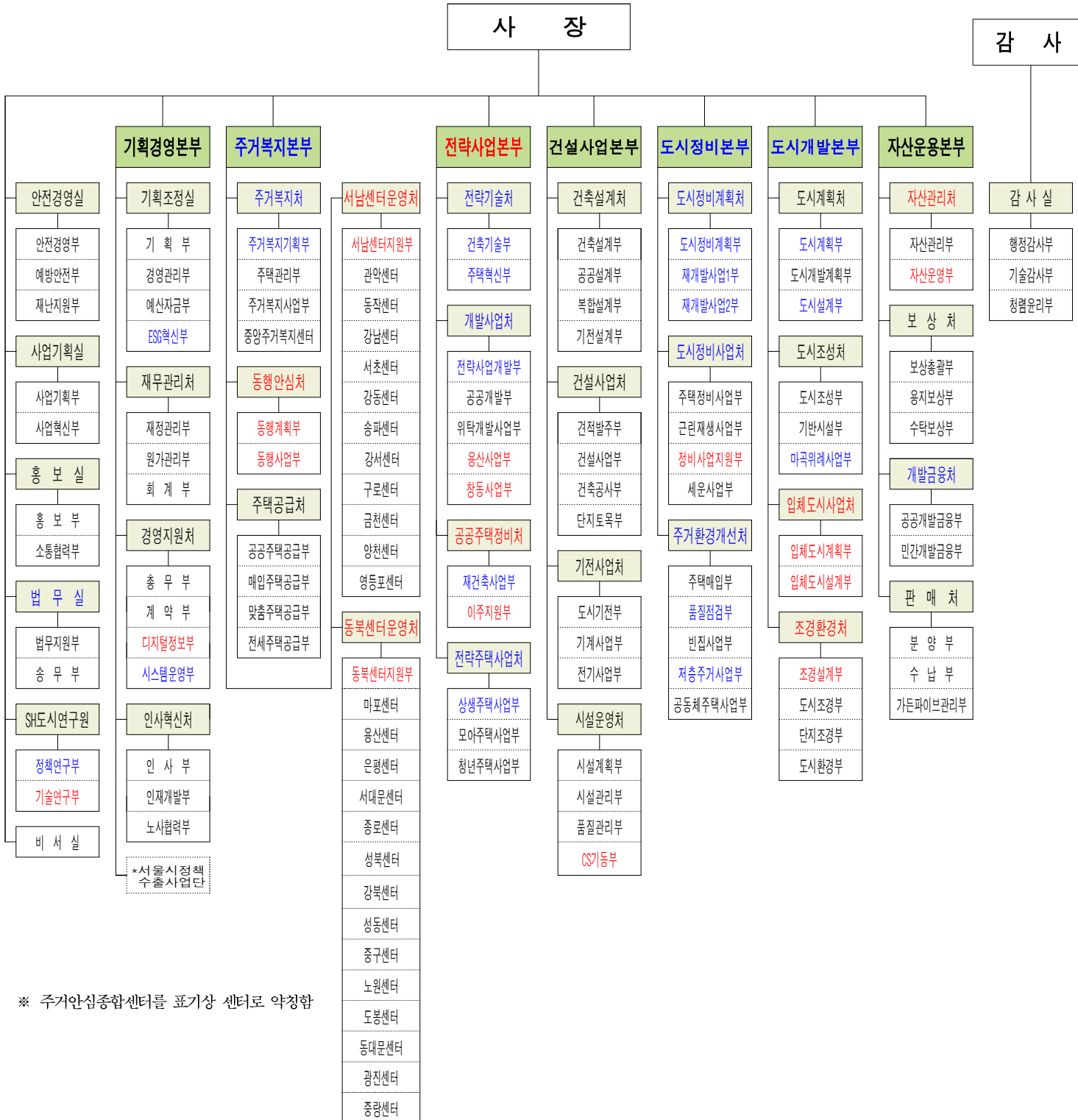
(개정(안))

총정원	임 원	직 원						
		계	사무직·기술직				주 거 복지직	전문직
			소계	1급	2급	3급 이하		
1,386	5	1,381	902	20	69	813	421	58

(붙임 1)

기 구 표

사장, 감사, 7본부, 6실 1원 27처, 101부 26센터
 (* 한시조직 1단 별도)



※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표기상 센터로 약칭함